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주)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0년 2월 12일

3. 변경사유

- 투자운용인력, 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투자신탁 재무정보·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운용 실적, 집합투자업자의 요약 재무내용·운용자산 규모 등 통계자료 갱신
-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개정

4.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4.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9층 ☎ 02-2077-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 02-2077-5000
5.투자운용인력	2009.4.16 기준 작성	2010.2.10 기준 작성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09.4.16 기준 작성	2010.2.10 기준 작성
14.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p>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1)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2)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p>	<p>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1)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2)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p>

	<p>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p> <p>①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할 것</p> <p>②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수익증권에 투자한 수익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p> <p>③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수익자 수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 또는 신탁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p> <p>①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및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은 제외합니다)</p> <p>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③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p> <p>※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p>	<p>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p> <p>※ 환급세액=외국납부세액×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p> <p>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p> <p>※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p>
--	---	---

	<p>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 상기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p> <p>※ 상기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009.4.16 기준 작성	2010.2.10 기준 작성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09.4.16 기준 작성	2010.2.10 기준 작성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09.4.16 기준 작성	2010.2.10 기준 작성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회사개요	<table border="1"> <tr> <td>주소 및 연락처</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9층 (☎ 02-2077-5000, www.consus.co.kr)</td> </tr> <tr> <td>자본금</td> <td>131억</td> </tr> </table>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9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자본금	131억	<table border="1"> <tr> <td>주소 및 연락처</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 02-2077-5000, www.consus.co.kr)</td> </tr> <tr> <td>자본금</td> <td>185.1억</td> </tr> </table>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자본금	185.1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9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자본금	131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 (☎ 02-2077-5000, www.consus.co.kr)									
자본금	185.1억									
다.최근2개 사업년도 요약 재무내용	2009.4.16 기준 작성	2010.2.10 기준 작성								
라.운용자산 규모	2009.4.16 기준 작성	2010.2.10 기준 작성								